

제 6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7. 7. 5.

안 건 명

-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심의결과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별첨 위원별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원수의 유입단계부터 최종방류수까지 전생애주기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수 처리시설 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최종방류수가 한강을 비롯한 지천 및 주변 지역의 수환경, 토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
- 현재 사용중인 처리장별 전기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효율화하고, 전력 사용효율을 최대화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할 것
- 본 과업과 병행 추진중인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과 토지이용 및 시설 배치 등 상호 연계가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부서)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1부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건	비 고
	○ 방류수역의 영향은 한강을 비롯해 지천 및 주변 지역의 토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질조사 시 주변 지역의 토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4p
	○ 기존 하수도시설에 연결된 노후 관망에서 비롯된 오염원은 수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 물재생센터 설치 시 관로 교체 및 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5,20p
	○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system 검토 시 원수 유입단계부터 최종방류수까지 전생애주기 검토에 덧붙여 최종방류수가 수환경에 유입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대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18p
	○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은 면밀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용역 시행 시 수립된 계획들의 실행에 대한 검토 기준을 적절히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체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7월 5일

심의위원 : 장 압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1/3)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상하수도	<p>① 과업내용서 1.2.2 과업의 목적에서는 중량 및 서남물재생센터의 과업목적이 상이하나 제2장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서 제3장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 수립의 과업내용이 일부 동일하게 제시되는 바, 상기 두개 과업의 차이점을 인지하기 어려움.</p> <p>→ 1.3.2 계획수립의 범위 재설정에 따른 제2장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제3장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 수립의 과업내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②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 제출(p5)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p> <p>→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u>최초</u>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1.10.2 과업내용 변경(p9) 2)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사항으로<u>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산하지 않거나 감액한다.</u></p> <p>→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사항으로<u>인정하지 아니한다.</u></p>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2/3)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상하수 도	<p>④ 과업내용서 p7의 1.7.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4)의 추가과업 내용과 p12의 6) 추가과업의 해당내용이 별도의 페이지에 분리되어 있어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p> <p>→ 「<u>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u>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u>추가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u>」로 내용을 합쳐 p7의 1.7.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4)에 수록</p> <p>⑤ 2)지역개발 및 인구에 관한 조사(p13)</p> <p>① 대상지역 개발현황 및 인구는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09, 서울시)”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수립중)”<u>자료를 검토 후 적용토록 한다.</u></p> <p>→ 자료를 검토 후 <u>적용하되 최신자료를 우선 검토 적용토록 한다.</u></p> <p>⑥ 4.2 성과품 작성규격</p> <p>4)의 표내용에 중량물재생센터(2단계) 기본계획과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의 성과품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야 함.</p>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3/3)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상하수도	<p>⑦ 과업수행 예정공정표</p> <p>예정공정표에 중량물재생센터(2단계) 기본계획과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의 예정공정이 각각 별도로 동시에 진행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반영 필요.</p>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7년 7월 5일

심의위원 : 조 현 석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시공	<p>1) 제3장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조사항목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의 지형, 지질 및 방류하천(한강)의 허용부하량 등에 관한자료 조사가 필요여부 확인 필요</p> <p>2) 제4장 성과품의 납품 최종 성과품 보고서(종이) 30부 제출로 제시되어 있는데, 종이보고서는 최소화하고, CD, DVD 등으로 제출함이 타당함. → 종이 문서의 활용성은 떨어지고, 보관의 어려움이 큼 → 도면 등은 CAD와 PDF로 구분하여 첨부 필요.</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7월 5일

심의위원 : 성 선 주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전력 설비	<p>1. 2.2.2 항 및 3.2.2 항에 다음사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용중인 처리장별 전기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효율화하고 전력 사용효율을 최대화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 <p>2. 2.2.3항 및 3.2.3항에 다음내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강압 방식, 효율적 배전계획이 포함된 전기시설 현대화 계획 작성. - 현대화 시설에 적합한 최신 에너지 절약 기술도입을 위한 전력시스템 구성계획 검토.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7월 5일

심의위원 : 배 민 호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환경	<p>1.5.1 과업수행방법(3 page) 2) “... 내실 있는 <u>기본계획</u>이 되도록 ... “을 “... 내실 있는 <u>계획</u>이 되도록 ... “으로 수정 검토</p> <p>1.5.4 업무협약 및 <u>공정보고</u>(4 page) ⇒ 업무협약 및 <u>보고</u>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을 “월간 공정보고“로 수정 검토 3) “... <u>담당분야별</u>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 “을 “... <u>분야별</u>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 “으로 수정 검토</p> <p>1.7.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6 page) 2) “... <u>만회대책 및 만회공정</u> ... “을 “... <u>부진공정 만회대책</u> ... “으로 수정 검토</p> <p>1.8.1 검토 및 자문회의(7 page) ⑤ “... 필요기관 등의 <u>주관 자문</u> 및 ... “을 “... 필요기관 등의 <u>자문</u> 및 ... “으로 수정 검토</p> <p>1.10.2 과업내용 변경(9 page) 2) “... <u>사전협약</u> 또는 승인사항을 미협약의 ... “을 “... 승인사항을 미협약의... “로 수정 검토</p> <p>2.2.3 중량물재생센터 기본계획의 내용과 같이 23 page에 “시설자동화계획 검토“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검토</p> <p>2.2.4 중량물재생센터 기본계획의 내용과 같이 23 page에 “시운전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검토</p>	
종합의견	<u>조건부채택</u>	

2017년 7월 5일

심의위원 : 이 상 택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플랜트	<p>1) p.18 4)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System 검토 ‘④ 각종 배관 재질 및 적정 가압시설 검토’ → ‘④ 각종 배관 재질 및 적정 이송시설 검토’ 로 변경필요</p> <p>변경필요사유 : ‘가압시설’ 은 통상적인 하수처리장의 시설용어가 아니며, 외부동력원이 없이 이송되는 자연유하 등도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광의의 함축적 용어로 변경함이 타당함.</p> <p>2) 기타사항은 의견없음. 끝.</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7월 5일

심의위원 : 정 경 철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제65차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공통 및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 '1.3 과업의 개요'에는 사업대상에 대한 대지면적, 위치도 등을 보완하여 금회 용역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할 것 ○ (p24) '4.2 성과품 작성규격'의 최종성과품 구성은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기본계획'과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 수립'으로 분리하여 제출토록 내용을 수정할 것 ○ 본 과업 대상지(중량, 서남물재생센터)에 기추진중인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연계 검토하여 금회 사업추진 계획과 일정 등에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p10) '1.12 발주기관 제공자료'에 추가하고 해당내용을 (p15) '⑥ 기존 하수도시설에 대한 조사'에 보완 할 것 ○ 「물재생센터 도시복합재생거점 구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본 과업과 병행 추진중인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과 토지이용 및 시설 배치 등 상호 연계가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부서)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p18) '2.2.4 시운전 계획' 중 '2)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 물품의 확보방안 및 시험분석 계획'은 공법선정 등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시 반영 검토할 것 	

	<p>○ (p24) '4.3 성과품 납품 및 인쇄'에는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에 제출 ②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p>○ '하도급 사항'과 관련 '(p3)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에 하도급 사항을 추가하고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전기	<p>○ "2.2.1·3.2.1 시설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 (15p, 21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변전·배전설비, 동력설비, 옥내외 조명설비, 비상용 전원설비, 통신·방송·감시설비, 계측제어설비, 접지설비 등은 	

	<p>기존설비(시스템)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통합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 계획하여야 한다.</p>	
<p>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15) 2.2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에 아래내용을 추가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부산물 처리계획 검토 ○ (p16) 2.2.2 기존시설 운영현황 분석 2)에 아래내용을 추가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러지 성상분석 ○ (p22) 3.2.3 처리시설의 계획 검토에 아래내용을 추가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부산물 처리계획 검토 ○ (p18, p22) 2) 악취방지대책에 아래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악취방지대책 <p>탈취설비계획은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포집대상 시설과 포집방법, 악취의 성상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탈취계획 및 처리방식을 검토 제시하고, 시설 유지관리 공간의 악취기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p> 	

2017년 7월 5일

심의위원 : 김 홍 갈 